

결 정 서

사 건 : 2015-357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REDACTED]

소속 [REDACTED] 직위 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REDACTED]

심 사 일 : 2015. 10. 14.

결 정 일 : 2015. 10. 14.

피청구인이 2015. 6. 19. 청구인에게 한 면직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 7. 22.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6. 19. 청구인에게 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사유

폐과로 인한 면직

2. 청구인 주장

가. 폐과 사유의 부존재

피청구인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의 2개년 평균율이 70% 미만인 학과 중 전체 학과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0%를 우선 폐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 소속 학과의 각 지표 2개년 평균율(2011년~2012년)은 아래 [표 1]과 같이 70.8%이므로, 해당 과는 우선 폐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신입생 확보율이 2012년도 100%, 2013년도 85%임을 고려할 때에도 폐과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러한 위법한 폐과 결정을 전제로 한 면직 처분 역시 위법하다.

[표 1¹⁾]

년도	신입생 확보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평균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크루즈해양 인테리어과	80	100	57.1	91.7	41.7	54.5	70.8%

나. 면직 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폐과절차)는 제4조 각 호 발생 1차년도에 자구계획서(발전계획, 신설과 설치계획) 제출, 전공전환 신청,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의 절차를 진행하고, 2차년도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신청 등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아래 기재 (1)~(3)과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신설학과 설치, 전공전환, 명예퇴직을 모두 거부하여 사실상 어떠한 면직회피 노력도 하지 않았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안한 신설학과(의료복지인테리어과) 설치에 대해 예비폐과 교원은 전공전환 동의서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2014. 12. 11.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폐과소속 교원의 신설학과 설치계획 제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신설학과 설치계획 제출을 거부한 것은 신설학과 설치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청구인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1) 2014학년도 구조조정 기초자료 참조

(2) 청구인은 미술학 학사, 미술학 석사 실내디자인 전공, 조형학 석사, 디자인 박사학위자이며, 청구인 학과에서 디스플레이 과목과 전시디자인 과목을 강의해온 경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패션스타일링 디스플레이 과에 신설된 패션상품디스플레이, 매장디스플레이 과목 담당 교수로의 전환 배치가 가능하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학과 교수들의 부동의의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해당학과 교수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교수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교원의 지위를 결정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위법한 규정에 해당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4. 9. 18. 및 2015. 1. 23.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거부하였다.

3) 피청구인은 다른 폐과 교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공전환 없이 또는 전공전환 후 학과이동 발령을 내주었으며, 명예퇴직 신청 또한 받아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직 처분은 형평성에 심히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판 단

가. 사건 경과

1) 청구인은 1991년 실내장식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1년 부교수 및 2009년 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2014년 학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 소속 학과는 2013. 1. 29. 제5차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폐과대상학과로 결정되어, 2014학년도부터 정원이 0으로 조정되었다.

3)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소속 학과 교수들이 2013. 4. 10. 건축과, 환경전시연출과, 보건의료시설과로의 학과 명칭변경을 신청하였으나, 2013. 4. 11. 피청구인 2013학년도 제1차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 회의결과 이를 불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 9. 18. 폐과교수의 자구책 방안에 관한 면담에서 2016. 2.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4) 피청구인은 2014. 12. 8. 청구인에게 폐과에 따른 해당 교수의 자구책 방안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2. 11. 자구책 방안으로 신설학과(의료복지인테리어과) 제안 및 2015. 12. 30. 패션스타일링·디스플레이과로의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2014학년도 제4차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에서 2015. 1. 19. 신설학과 제안은 서류 및 규정 결격 사유로, 전공전환 신청은 이동 희망학과 소속 교원이 부동의했다는 사유로 기각되었다.

5) 피청구인은 2015. 1. 22. 청구인에게 전공전환 신청서 제출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5. 1. 23.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나, 2015. 2. 16. 2014학년도 제5차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청구인의 명예퇴직 신청은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하였다.

7)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5. 18. 청구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19. 폐과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하였다(2015. 6. 24. 청구인 수령).

나. 폐과 결정의 위법여부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의 2개년(2011년~2012년) 학과 지표평균율이 70.8%이므로 피청구인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폐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과 지표평균율은 2014. 3. 1. 개정된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개년 학과지표평균율을 산정한 것인데,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 폐과가 결정되던 2013. 1. 29. 당시의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3개년' 학과 지표평균율을 폐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폐과 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3개년 지표평균율은 아래 [표 2]와 같이 53.6%로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는 지표평균율이 70% 미만인 학과에 해당되어 최우선 폐과 대상 학과에 해당되므로 폐과 사유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 22]

년도	신입생 확보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평균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크루즈해양 인테리어과	37.5	60	75	40.0	57.1	91.7	25.0	41.7	54.5	53.6

다. 면직 처분의 위법성 여부

1) 신설학과 설치계획 거부의 위법성 여부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는 발전계획 및 신설과 설치계획 등의 자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표평균율이 70% 미만인 학과 중 예비폐과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동 규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예비폐과라 함은 폐과되기에 앞서 구조조정에 의하여 학과의 폐지가 결정되어 학과 신입생 편제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는 학과를 의미하는데,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의 경우 2014년도 정원이 최초로 0명이 되어 2014년도부터는 예비폐과 된 학과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2014. 12.경 신설학과 설치를 신청하였는데, 신청 당시 청구인 소속학과는 지표평균율이 70% 미만인 학과 중 예비폐과 된 학과에 해당하여 단서조항에 따라 신설학과 설치계획 제출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공전환 신청의 거부의 위법성 여부

피청구인은 이동학과 교원 전체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전공전환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이동학과 교수의 동의 여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면직회피 여부 심사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가사 구성원 일부의 동의를 요하는 것을 전공전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과중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제4호를 들어 전공전환 신청을 거부함은 위법성이 인정된다.

2)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2013. 1. 29.) '학과(계열)별 3개년 공시지표 현황' 참고

3) 명예퇴직신청 거부의 위법성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학년도 하반기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시행 공고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기간(2014. 10. 1~2014. 10. 13.)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 대학발전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폐과소속 교원의 퇴직은 본 교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수당지급 규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어 폐과의 경우 정기 명예퇴직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권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해당 수당지급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규정 해석상의 오해가 인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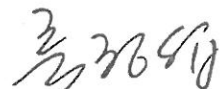
4. 결 론


이동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서를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전공 전환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른 면직회피 심사를 거친 것이라 볼 수 없어 면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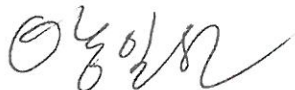
2015. 10.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성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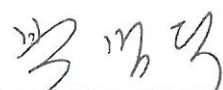
상임위원 류정섭 

위원 고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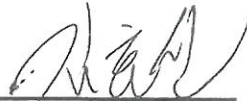
위원 양일선 

위원 김동춘 

위원 문영기(불참)

위원 박범덕 

위원 김경배(불참)

위원 김효신 

위 정본임.

2015. 10.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